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朝鮮王朝의 老人인식과 敬老制度에 관한 研究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浩一

文學碩士學位論文

朝鮮王朝의 老人인식과 敬老制度에 관한 研究



釜慶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浩一

李浩一의 文學碩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년 2월 25일



主 審 文學博士 李 根 雨 印

委 員 文學博士 申 明 鎬 印

委 員 文學博士 曹 世 鉉 印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II. 조선왕조시대 유교의 노인인식과 나이와 신분	3
1. 유교의 노인인식	3
2. 나이와 신분에 따른 구분	5
III. 조선시대 노인제도	9
1. 효행징표제(孝行旌表制)	9
2. 양로연 실행(養老宴 設行)	10
3. 기로혜양책(耆老惠養策)	14
4. 기로소 설치(耆老所 設置)	22
1) 유래와 변천	22
2) 운영실태	30
3) 경로행사	35
5. 치사제(致仕制)	42
IV. 결론	51
참고문헌	55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an old person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Ho Il Lee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onfucianism made a great role for our unified country. The Chosun dynasty founded in 1392 by Lee Sunggye's coup d'etat adopted the 'Eogboolsoongyoo' policy (oppressing Buddhism and encouraging Confucianism). The Chosun dynasty executed the policy in favor of the old people based on Confucian ethic such as Aechingyungjang(to love the parents and respect the elder), and Gyungrojonhyun(to respect the old and the wise). It also classified the people at the age of 50 years more as Noin(the old), to execute the policy taking care of the old people according to their social position; Kookro, Seoro and Cheonmin(high, middle and low class people), so that it may develop the centralized Yangban(Noble class) bureaucratic system stably by execution of Confucian-ism politics and ruling ideology with Jinhyooljungchaek(policy for helping the poor). and sahaegyohwachaek (policy for social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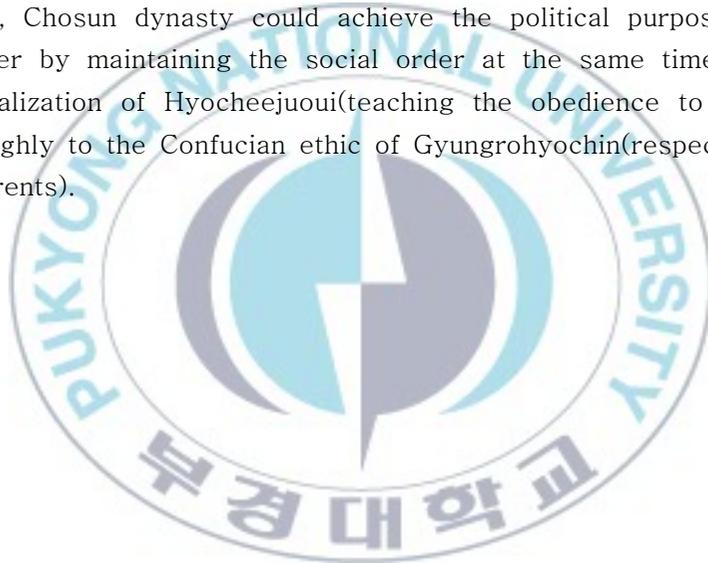
First, it applied Hyohaengjungpyoje(obedient-to-the parents system) to the middle class elder and awarded to Hyoja, Ouiboo and Jeolboo(people who obey and take good care of the parents and the old). Second, it gave feasts, named Yangroyunseolhaeng(party for the old), to all of the old(Kookro, Seoro and Cheonmin) with the attendance of king and his crown prince, and promoted all of them by one grade each with Gajaje(promotion system). Third, it offered exempt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or compulsory labor to the young people who take good care of the aged parents by applying Gorohyeyangchaek(policy of helping the old), for all classes of the old; Kookro, Seoro and Cheonmin. The kingdom allowed the old without son to get one as Seejung(attendant), among the grand children either

from his son or from his daughter. Besides, there was system of a various Seejung, by which the old people were looked after.

It operated Giroso(a place the retired high officials gather together and discuss the country issues) only for the high class people, where the retired officials were well treated and they had power to discuss and decide the country issues. Giroso, king also joined in was operated by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Only 70 years old or more people retired from the Jeong 2poom or higher position in the government are allowed to join in Goroso and the military officers were not accepted, which shows Chosun dynasty's Soongmoongyungmoo ideology(respecting scholars and dismissing the military officers).

In conclusion, Chosun dynasty could achieve the political purpose of reinforcing the king's power by maintaining the social order at the same time by Giro policy through the realization of Hyocheejuoui(teaching the obedience to the old), which followed thoroughly to the Confucian ethic of Gyungrohyochin(respecting the old and obeying the parents).



I. 서론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전해져 온 유교는 불교와 서로의 관계를 가지며 이 민족이 고대국가인 3국을 만들고 또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교는 1392년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의해 탄생된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이 되었으며 개신유교(改新儒教)인 성리학을 받아들여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송유억불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조선왕조는 건국초기부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애친경장(愛親敬長: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 경로존현(敬老尊賢) 등 유교적 실천윤리에 따라 노인우대 제도를 시행하였다. 조선왕조는 진휼정책(軫恤政策: 흉년에 백성을 도와주는 정책) 및 사회교화책(社會教化策) 차원에서 고대국가시대부터 계속 실시해 온 노인우대제도를 과감히 시행하여 궁극적인 조선왕조가 생각하는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을 계속 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목적에 의해 국가제도의 하나로 추진한 유교에서의 노인인식과 시행한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노인들에게 실시한 효행정표제(孝行旌表制: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을 세상에 알리는 것), 양로연(養老宴)의 실행과 특히 기로신만을 위해 설치한 기로소 운영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박상환 저)』를 재인용하여 유교를 사상적 교화책으로 백성을 이용한 성격들을 살펴보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의 변화를 보면서 현대 노인복지와 비교 분석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Ⅱ. 조선왕조시대 유교의 노인인식과 나이와 신분

1. 유교의 노인인식

일찍이 공자는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 남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맹자는 “사양하는 마음이 예의 실마리이다.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예란 인간이 살아가는 형적(形的)인 모든 것, 외적인 가치와 총체를 말하며 특히 노인들에 대한 유교의 인식은 인간관계 형성에 효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유가(儒家)사상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백과사전인 5경 예기는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예기(禮記)』는 윤리와 도덕의 이론과 실천방법의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사상에 기초하여 정당한 교훈으로 보여 주고 있다.¹⁾ 옛날 순(舜)임금 시절에는 덕(德)을 귀하게 여기고 나이 많은 이를 높였으며 하(夏)나라에서는 작위(爵位)를 귀하게 여기고 나이 많은 이를 높였으며 주(周)나라에서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나이 많은 이를 높였다.²⁾ 그런 까닭에 조정에서는 작위가 같으면 나이 많은 이를 높였다.

70세가 되면 조정에서는 지팡이를 짚을 수 있었고 임금의 불려서 물을 때에는 자리에 앉게 하였으며 80세가 되면 조정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임금이 물을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갔다. 길을 갈 때에는 나이 많은 사

1) 지재회, 『예기』 상, 자유문고, 2000년, 4쪽.

2) 지재회, 위의 책 하, 95쪽.

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고 옆으로 약간 뒤떨어지거나 혹은 뒤를 따라가며 길에서 노인을 만나면 수레에 탄 사람도, 걸어가던 사람도 길을 비키며 반백(斑白)의 머리를 한 사람이 짐을 지고 길을 가는 일이 없었다.³⁾ 또 천자가 여러 나라를 순시할 때 먼저 1백세 된 노인을 찾아보며 80세, 90세 된 노인이 동쪽으로 가면 천자는 서쪽으로 가다가도 감히 지나쳐 버리지 않고 만나고 노인이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도 감히 지나쳐 버리지 않고 만난다. 노인으로서 천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임금은 사양 않고 그를 방문했다. 관직에 있는 사람도 향리에서 교체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분을 높이고 70세가 된 노인이 중대한 일이 있지 않으면 조정에서 들어가지 않으며 만약 중대한 일이 있어 조정에서 들어가면 임금은 반드시 그에게 읍(揖)하여 인사하고 나서 다른 신하와 인사했다.⁴⁾

그리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교화와 지배질서 강화수단으로 이성계가 교지를 통해 자신의 통치의지를 발표하고 “충신, 효자, 의부(義夫), 절부(節夫)는 풍속에 관계되니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유교의 윤리규범인 효를 강조한 것을 보면 유교의 노인인식을 알 수 있다.⁵⁾

그러나 현대의 유교의 윤리규범은 세월의 흐름에 의해 차츰 그 예가 잊혀가고 있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교를 숭상했던 500년의 긴 세월의 잔재가 아직이나마 이 사회에 전하여 내려오는 데 있다. 명절에 고향을 찾고 부모와 조상의 묘를 찾아 절하는 것을 보면 잊혀 가는 효 사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지재회, 앞의 책 상, 95쪽.
4) 지재회, 앞의 책 상, 98-99쪽
5)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조.

2. 나이와 신분에 따른 구분

조선시대에는 50세를 기준으로 노인으로 정하였으며 서인들은 50세가 되면 ‘애(艾)’라 하여 정사를 맡아 복무하며 60세가 되면 ‘기(耆)’라 하여 사무를 지시하고 사람을 부렸으며 70세가 되면 ‘老’라 일컬으며 모든 집안의 일을 자식에게 전하였다. 80세~90세가 되면 ‘모’라 일컫는다. 모는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100세가 되면 ‘기(期)’라 일컬으며 봉양 받았다.

반면 양반들의 대부분은 벼슬을 70세가 되면 반납하였다. 만약 사양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받으며 일을 행할 때에는 부인을 따르게 하고 어디를 갈 때에는 편안한 수레를 탔다. 또 어른에게 일을 의논할 때에는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가지고 갔으며 어른이 질문하였을 때 사양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50세 된 노인은 향학(鄉學)에서 노인을 접대하는 예(禮)를 받게 되고 60세가 되면 국학(國學)에서 접대하는 예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제후(諸侯)에게도 통용된 것이었다.⁶⁾ 80세 된 노인이 임금의 명(命)을 받을 때는 한번 꿇어앉은 채 머리만 두 번 땅에 닿도록 재배(再拜)하고 90세 이상의 노인이 임금의 명을 받을 때에는 사람을 시켜서 받았다.

그리고 50세 된 노인은 양식을 젊은 사람과 달리하며, 60세 된 노인이면 미리 고기를 준비하고, 70세 된 노인이면 맛 좋은 반찬을 올리고 80세 노인이면 항상 진미(珍味)가 있어야 하고 90세 된 노인이면 침실에 음식이 떨어져서는 안 되며 맛 좋은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그가 가는 곳을 따라 다녔다.

6) 지재회, 앞의 책 상, 31쪽.

60세가 되면 관(棺)을 준비하고, 70세가 되면 상례 때 쓸 기물 중에서 마련하기 힘든 것을 준비하고 80세가 되면 상례 때 쓸 기물 중에서 마련하기 쉬운 것을 준비하고, 90세가 되면 이미 준비된 것들을 손질하는데 다만 ‘효(效)’와 ‘금(紵)’, ‘금(衾)’, ‘모(冒)’는 죽은 뒤에 만든다.⁷⁾ 위 내용으로 보아 노인의 기준은 50세로 정했고 나이 많은 자를 공경하는 것은 농경사회의 예속으로서 연장자의 풍부한 지식과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데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기로에 대한 존로의식(尊老意識)은 농경사회에 이루어진 유교사상에서 근본적인 도덕규범으로 하는 효에 기반이 있는 것이다. 효는 자기 부모와 또 다른 노인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 또 도덕적인 범위로 경로(敬老)를 정치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므로 가족제도는 효도(孝道)를 왕권과 연결시키는 논리의 근원이 되었다. 효도는 가족의 화평을 유지시키며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는 기본이 됐다. 따라서 군왕들은 다 같이 효도를 정치(政治) 제일의 요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족윤리의 확대가 사회윤리가 되었다.

또 윤리는 봉건사회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군왕(君王) 자신도 효를 실천하면서 백성에게 덕치(德治)를 실현하는 치자(治者)의 윤리규범으로 효를 근본으로 하였으며 효도사상이 경로사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하는 경로사상이 통치자들의 노인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또 군왕들의 통치수단인 유학의 예서(禮書)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화정책(敎和政策)을 시행하면서 노인정책으로서 각종 행사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신분사회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양반과 서인이 있었다. 『예기』에 보면 천자가 죽은 것을 ‘붕(崩)’이라 하고 제후가 죽은 것을 ‘홍(薨)’이라 하며 대부가 죽은 것을 ‘졸(卒)’, 사(士)가 죽은 것을

7) 지재회, 앞의 책 상, 283-284쪽.

‘불록(不祿)’, 서인이 죽은 것을 ‘사(死)’라고 했다.⁸⁾

신분에 따라 상례와 제례에는 천자가 죽은 지 7일 되는 날에 빈(殯)하여 7개월 만에 장사지내며 대부(大夫)와 사(士), 서인(庶人)은 죽은 지 3일 되는 날에 빈하여 3개월 만에 장사지냈는데 3년의 상(喪)을 지키는 것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했다. 그리고 서인은 밧줄을 관(棺)에 매어서 하관(下棺)하며 장사지내는 날에 비가 내려도 중지하지 않았으며, 봉분(封墳)을 만들지 않고 묘 주위에 나무를 심지 않으며 상중에는 거상(居喪)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상례(喪禮)는 죽은 사람의 신분에 따르고 제례(祭禮)는 산 사람의 신분에 따랐다.⁹⁾

위 내용으로 보아도 조선시대에는 죽음에 있어서도 양반과 서민의 신분상 차이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조선은 양반사회로서 양반에 대한 우대정책을 주로 실시하였다. 국로(國老)들만의 회연과 일반 서인(庶人)에게 실시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신분상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회는 양(兩), 서(庶), 천(賤) 구분 없이 합동으로 실연(實演)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나이와 신분에 따라서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있어서도 초고령자나 큰 질병이 없으면 특별한 사면이나 감형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치사제도(정년퇴직)도 모든 공무원은 현행 60세로 정해져 있다. 또 관(棺)을 준비하는 것도 현대와는 맞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하관(下棺)하여 장사지내는 것도 차이가 많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현대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3일장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양반, 서인, 천민으

8) 지재희, 앞의 책 상, 89쪽.

9) 지재희, 앞의 책 상, 262쪽.

로 구분이 되었으나 현대와 와서 신분상 차이는 없어졌으며 연회도 국가에서 일절 실시하지 않으며 1년에 1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정해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조선시대 노인제도

1. 효행정표제(孝行旌表制)

조선왕조의 정치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때는 태종대로 이때 대사헌(大司憲) 한상경 등은 ‘시무 10조’를 상계하여 “「맹자」에 이르기를 사람은 그 아버이를 친 아버이로 여기고 그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게 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효자, 의부, 절부를 살펴 물어 포상함으로써 풍속을 가다듬게 하소서.”¹⁰⁾라고 하였다. 풍속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 의부, 절부를 조사하여 포상토록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효행정표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종대에는 조선왕조의 통치가 안정되어가는 시기다. 따라서 풍속을 교화하기 위한 정표정책은 노인정책강화¹¹⁾와 더불어 활기를 띠고 있었다. 세종은 즉위 교서에서 “의부, 절부, 효자 등은 의리상 표창해야 될 것이니 방문하여 사실을 자세히 적어 아뢰어 표창하게 할 것이다.”¹²⁾라고 하여 국가에서 효행자를 직접 가정에 가서 조사한 뒤 정상(旌賞)토록 하였다.

세종의 뒤로 역대 군왕들 또한 즉위초에 자신들의 정치향방을 밝히면서 대부분 효자, 의부, 절부를 우대하여 정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¹³⁾ 즉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과 실시 및 장려, 『삼강행실도(三

10)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윤7월 계해조.

11) 세종대는 기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로연 등을 새로 마련하였고 『효행록』, 『삼강행실도』 등을 간행하여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위한 제반정책을 활발히 시행했다.

12)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 11월 기유조.

13) 『문종실록』 권5, 문종 즉위년 12월 무술조.

綱行實圖』의 간행 및 반포,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와 『경민편(警民編)』 등의 윤리서를 편찬¹⁴⁾하면서 풍속의 교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중종대의 시책은 유교적 사회질서를 위한 적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종대의 정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효자이다.¹⁵⁾ 여기서 중종이 효치주의적 입장을 얼마나 강조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나라가 이처럼 효를 강조한 것은 풍속을 돈독히 하고 교화하는데 대단히 교화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효행정표정책은 태조 원년 7월에 그 방침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때까지 계속 실시되었다.¹⁶⁾ 따라서 노인정책은 조선시대 모든 시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모두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조선시대의 효행정표제도와 같은 국가시행은 없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유교단체에서 효행에 관한 시상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양로연 실행(養老宴 設行)

양로의 의미는 그 ‘노(老)’를 귀하게 여기고 신분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천민들도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노인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가자제(加資制)에 적용되었다. 이는 모든 노인에 대한 예우가 귀천에 관계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조선이 신분제사회

14)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0, 53쪽.

15) 위와 같음

16) 위와 같음

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조선왕조가 노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다. 조선왕조가 실시한 노인정책 속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양로연이다.

고려시대에 실시한 양로연회는 조선왕조에 이르러 한층 법률화, 제도화 되고 정치사회적으로 노인정책의 다양화와 더불어 국가의 중요행사로서 높은 비중을 더해 갔다. 이 양로연은 단순한 연회가 아니고 엄격한 의식에서 실행되었으며 확실한 의미가 부여된 연회였다. 이 양로연은 치사(정년퇴직)한 노인 즉 국로(國老)와 서인(庶人)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군신상회연(君臣相會宴)은 기로소에서 행하여졌으며 연회는 군왕과 국로가 함께하는 군신상회연(君臣相會宴)과 국로(國老)들만의 회연으로 열리는 기로연(耆老宴)과 기영회(耆英會) 등으로 나뉘었는데 기로연의 성격은 국로들 중에서 정2품 이하의 50세 이상자의 모임단체로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을 가졌으며 기영회는 정2품 이상과 70세 이상의 치사자 모임단체로서 국가정책에까지 깊숙이 개입¹⁷⁾한 것으로 봐서 비록 치사했으나 그 권력은 막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양로연(養老宴)은 서로(庶老)에게 열린 연회로서 국로를 대상으로 한 연회와는 달리 경로행사로서의 의미가 강했다.¹⁸⁾ 양로연은 태조 이성계가 노인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¹⁹⁾함에 따라 역대의 군왕들에 의해 조선 모든 시대에 걸쳐 치교(治教)의 한 방편으로 실시되었다.²⁰⁾ 즉 양로연은 비록 기근이 드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국가의 중대사로 여기고²¹⁾ 다른 연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인군(人君)이 행해야 할 당위적인 것이자 조정이 꼭 지켜야 할 도리로서 효를 일으키는 것으로 중요시되었다.²²⁾ 이에 세종

17) 박상환, 앞의 책, 55쪽.

18) 국로와 서로, 『목민심서』 권3, 애민6조 제1조 양로조.

19)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조.

20) 『기사지』 권9, 무편 4 사연조.

21)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 중종 12년조.

대에는 중추(仲秋)에 연회를 베풀고 지방의 노인들을 수령이 봉향(奉餉)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양로연을 강화시켰다.²³⁾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중추에 예조가 길일(吉日)을 정하여 양로연의 실행 일자를 잡아 올리고 이를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먼저 알렸다.²⁴⁾ 지방에서도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양로연에 의하여 소재관리가 길일을 정하여 경내 노인 80세 이상자에게 연락하였다.²⁵⁾ 이 양로연은 원래 사대부층 나이 많은 자들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되었던 것이다.²⁶⁾ 세종 17년에는 100세 이상자에게도 매년 세초(歲初)에 쌀과 주육을 내렸을 뿐 아니라 80세 이상자에게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지방에까지 사연(賜宴)하도록 법률로 제정되었다.²⁷⁾ 세조대에는 연령을 80세에서 70세로 낮추고 양로연 참가 자격을 확대 규정하고 세조 원년 10월에는 양로 220인에게 양로연을 실행하였다.²⁸⁾

특히 세종은 예조판서이던 허조 등을 시켜 ‘오례(五禮)’를 편찬토록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조대를 지나 성종대에 완료되어 양로연은 하나의 제도로써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²⁹⁾ 그리고 이 양로연의 설연(設宴) 기간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열릴 경우 3, 4일씩 대대적으로 계속되었다.³⁰⁾

양로연 진행 중에는 사물(賜物)과 공궤(供饋)들이 행해졌다.³¹⁾ 사여(賜與)의 기준은 지방별, 연령별, 신분별, 관직별로 차이가 있었고 그 밖에 우대를 위한 노인직, 수직(壽職) 등이 재수되었다. 한편 설연이 번거롭거나³²⁾

22)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12년조.

23)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 세종 17년조.

24)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정월 정묘조.

25)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정월 병자조.

26) 『세종실록』 권57, 세종14년 8월 경자조.

27)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 세종 14년..

28)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 세조 원년 7,10월조.

29) 『증보문헌비고』 권76, 예고23 연례, 경종 19년조.

30)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5월.

31) 기로에 대한 가자행사는 양로연 행사시 개인별로 달리 행해진 기로우대가 목적이었다.

32) 『세종실록』 권57, 세종 1년 8월 임인조.

유고(有故)하여 노인들이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³³⁾와 일기 관계로 개최가 어려울 때³⁴⁾나 흉황으로 설행하지 못했을 때³⁵⁾, 供饋(음식)로써 대체하였다. 양로연이 개최되었더라도 잔치를 마친 다음 어육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³⁶⁾ 특히 지방에서 사물, 공궤할 때는 그 지방의 관아에서 때로는 좌수, 도승지 및 좌(左), 우(右) 승지를 보내어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³⁷⁾ 이러한 공궤사물의 사례는 양로연 행사가 진흥적인 노인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로연 행사 때는 인군(人君)이 노인에 대한 배려를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양로연에서 연상(宴床)을 차릴 때 ‘80세 이상이면 그 찬은 네 접시로 하고 90세 이상이면 여섯 접시로 한다.’³⁸⁾고 하였는데 이는 노쇠한 정도에 따라 음식을 대접하는 깊은 배려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양로연이 열릴 때는 양로의례에 따라 체안지악(體安之樂), 문명지곡(文明之曲), 관천정지악(觀天庭之樂), 양로아악(養老雅樂)을 연주하여 흥을 돋우었다.³⁹⁾ 한편 양로연이 열릴 때는 구언(求言)하는 절차도 있었다. 『목민심서』에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말을 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백성의 괴로움과 질병을 물어서 이 예에 맞추도록 할 것이다.”⁴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양로연에는 민의상달(民意上達)의 역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양로연 행사는 국가 주도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민의상달의 기능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한노인회 및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인복지 시설과 대한사회복지사협회의 건의를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 반영

33)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 30 기로조, 성종 2년 9월조.

34) 『성종실록』 권232, 성종 20년 9월 을사조.

35) 『성종실록』 권47, 성종 5년 9월 병진조.

36) 『성종실록』 권133, 성종 12년 12월 정오조.

37) 『중종실록』 권63, 중종 23년 10월 갑인조.

38) 『목민심서』 권3, 애민 6조 제1조 양로조.

39) 『세종실록』 권133, 양로의.

40) 『목민심서』 권3, 애민 6조 제1조 양로조.

에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때도 있으나 아동시설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기로혜양책(耆老惠養策)

기로혜양책 속에 시정복호제(侍丁復戶制)가 있었다. ‘시정복호제’란 늙은 부모를 봉양하도록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부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써 역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즉 70세 미만일지라도 질병에 걸리면 시정 1인을 지급하고 자식이 없을 경우는 친손, 외손 중 1인을, 친손과 외손이 없을 시, 질자(姪子)와 질손(姪孫) 중 1인을 시정으로 세울 수 있었다.⁴¹⁾ 세조대에는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90세 이상이면 모든 자식을 시정으로 주었고 5인 이상의 자식이 군역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는 부모가 70세에 이르지 않아도 시정 1인을 지급토록 하였다.⁴²⁾ 시정제는 군역과 마찬가지로 벼슬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즉 부모나 80세 이상인 자가 벼슬에 종사(從仕)할 경우는 귀향하여 봉양토록 하였는데 만일 부모가 자식들의 종사를 계속 원하더라도 자식들 가운데 1-2인은 귀양(歸養)토록 하였다. 그리고 자식이 사망하면 친손으로 하여금 귀양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정제의 운영은 귀천의 구별없이 적용되었다. 세종 14년 9월 상정소(詳定所)에 전지를 내려 공사천(公私賤)에 대한 시정복호법을 ‘老病君民侍丁復戶法’에 의해 상정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그것이다.⁴³⁾ 한편 『경

41)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9월 을묘조.

42) 『세조실록』 권24, 세조 7년 6월 경오조.

국대전』에는 노비에 대한 시정법도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노비에게도 노인이 되면 봉양할 자가 필요하며 80세 이상의 경우는 시정 1인을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모든 자식을 시정으로 면역시켰다.⁴⁴⁾ 이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면역규정에 신분의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정법은 노인정책에서 왕정(王政)의 중요한 시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⁴⁵⁾ 법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다.

그러나 양로를 위한 이러한 시정제도의 운영은 군액(軍額)의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세조는 시정(侍丁)을 지급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신역자(身役者)를 택하여 귀양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이도록 하였고 왕의 대열(大閱)이나 징병이 있을 때는 시정을 구록(具錄)하여 병역을 대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시정으로 인한 면역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자 성종대에는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독자(獨者) 이외에는 시정지급을 승인하지 않기도 하였다.⁴⁶⁾ 이와 같이 시정제도가 군액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한 것은 시정제도가 노인정책의 차원에서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정책 하에 시정제와 궤를 같이하여 함께 운영된 것은 면역(免役), 복호제(復戶制)이다. 원래 고려조와 조선왕조에서 국역의 부과기준은 동일하였다. 즉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된 고령자는 군역에서 제외되었다.⁴⁷⁾ 이러한 면역제도는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⁴⁸⁾ 그 기준은 사류층(士類層)의 대소인(大小人)으로 장정 10인 이하를 거느리고 전지 10결 이하를 소유하면 복호(復戶)하고 평민(平民)과 공사천(公私賤)은 장정 5인

43)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9월 계유조.

44) 『경국대전』 권5, 형전 공천조.

45)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2월 무술조.

46) 『성종실록』 권11, 성종 2년 8월 을묘조.

47) 『고려사』 권118, 열전 31 조준박.

48) 『경국대전』 권4, 병전 복호조.

이하를 거느리고 전지 5결 이하를 소유하면 복호하였다. 또한 90세 이상인 자는 장정과 전지의 다소에 상관없이 복호하였다.

조선왕조의 국역(國役)은 요역(徭役)과 군역(軍役)으로 나누어지는데 요역은 군역보다 폭 넓은 국역으로서 위로는 왕실족친으로부터 아래로는 공, 사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정(人丁)에게 부과되었다. 따라서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복호의 특전을 받지 않으면 요역을 지게 되어 있었다.⁴⁹⁾ 그렇게 볼 때 80, 90세의 나이를 기준해서 복호의 특전을 준 것이라든가 2품의 직사를 지내고 나이 70세 이상으로서 전리(田里)에 퇴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호규정⁵⁰⁾은 모두 노인에 대한 특혜조치로써 취해진 노인정책이었다. 또 사면제(赦免制)라는 것이 있었다.

조선왕조의 사법제도는 고려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전제 왕권과 관인지배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왕권 유지와 사회질서를 위하여 제도상으로 백성에게 강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치안과 민생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2년 7월 교서를 내려 『대명률(大明律)』을 조선의 율로 의용시행(依用施行)할 것을 선포하였다.⁵¹⁾ 그러나 이 『대명률』은 한자가 어렵다는 문제와 조선 사회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태조 4년(1395), 『대명률』을 조선 실정에 맞게 이두문으로 해석하여 『대명률직해』로 발행하였다.⁵²⁾

『대명률』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제정되기까지 조선의 형법으로서 사용되었는데 본래 효를 실천하려는 덕치주의적 성격이 짙었던 것이었다. 『경국대전』도 “용(用) 『대명률』”이라 하여 『대명률』의 의용을 명시하고 있듯이 그 내용은 마찬가지로 노인을 공경하는 입장으로 일관해 있

49)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5, 174쪽.

50) 『경국대전』 권4, 병전 복호조.

51)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조.

52) 연정열, 『경국대전과 노비상속에 관한 일 연구』,

다. 그러므로 『대명률』에 나타난 조항은 대체로 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경국대전』에는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강도, 살인의 경우가 아니면 수금(囚禁)하지 않고 자(刺)하지 않는다.”⁵³⁾라는 조항이 있다. 70세 이상 노인은 사회적인 고립을 요할 만큼의 범죄가 아니면 신체를 구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죄를 심문할 때도 70세 이상인 자는 고문하지 않고 다른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⁵⁴⁾ 그리고 급가제(給暇制)라는 규정이 있었다. 조선왕조의 관원이나 군역자에 대한 급가(給暇)규정은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조선시대 급가제도의 특징은 노친 봉양이나 영친(榮親), 영분(榮墳) 등의 효행 목적과 시향복제(時享復制: 조상의 묘에 제사) 등 작고한 선조에 대한 제행 목적을 두고 있다. 급가제도에는 특히 생존하고 있는 부모를 찾아보는 귀성(歸省)휴가⁵⁵⁾나 관직에 임명된 영예를 부모에게 돌리는 영친(榮親)휴가⁵⁶⁾ 등이 있었고 부모에게 병이 있을 때는 장기 휴가를 주어 돌봐주도록 하였다.

휴가는 원도(遠道)는 70일, 근도(近道)는 50일, 경기 내(內)는 30일을 주었다.⁵⁷⁾ 그리고 70세~9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시정 지급규정과 같이 각각 귀양토록 규정하였다.⁵⁸⁾ 그리고 영분(榮墳)휴가나 죽은 조상에 대해 추증이 내려졌을 때 그 자손이 묘전(墓前)에 고하는 분황(焚黃)휴가 등은 모두 7일이었다.⁵⁹⁾ 그리고 가자제(加資制)를 실시하였는데 노인을 우대하

53) 『경국대전』 권5, 형전 수금조.

54) 『대명률 직해』 권28, 단속 노유불신문

55) 『경국대전』 권1, 이전 급가조

56) 위와 같음

57) 위와 같음

58) 위와 같음

59) 위와 같음

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높여 줌으로써 위로하고자 한 것이 가자(加資)에 의한 노인직(老人職) 제수였다. 이는 비록 무록산직(無祿散職)이지만 노인의 연륜과 함께 그들의 자금(資級)을 높여주고 직함을 내려주어 받들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에는 아직 가자(加資)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다만 경로적 의미로서 연로하고 효행이 뛰어난 노인에게 자헌직(資憲職)을 내려 종신직(終身職)으로 삼게 하거나⁶⁰⁾ 통훈 이하 당상관(堂上官)에게 봉작(封爵)의 은전(恩典)을 베푸는 정도였다.⁶¹⁾ 그러다가 90세 이상 백신(白身)과 100세 이상의 백신 및 천인(賤人)에 대해서 노직을 제수하는 가자(加資: 품계를 올려주는 것)를 행하였다.⁶²⁾ 그리고 의정부와 6조 집현전 등에 명하여 100세 이상 관리의 부인에게는 벼슬을 봉하고 부모로서 90세에 이른 자에게는 관에서 봉작하였으며 100세 이상 부부에게는 모두 노직(老職)을 주어 봉작토록 하였다.⁶³⁾ 동시에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전국의 90세 이상 노인을 조사해 올리도록 명하였다.⁶⁴⁾

세종 17년 7월에는 처음으로 노인에 대한 ‘관교작첩규식(官敎爵牒規式: 관에서 교육시키는 규칙)’이 마련되어 노인에게 동반(東班)은 예빈사(禮賓寺)의 사재감(司宰監)을 제수하고, 서반(西班)은 사직(司直) 이하의 관직을 각각 직품에 따라 알맞게 제수하였다. 이는 동(東), 서반(西班)의 말은 바 관직이나 세계(世系)를 상고하여 알맞은 관직을 임명하였음을 말한다.⁶⁵⁾ 이외에 천직(賤職)에 대한 가자를 보면 양로행사로서 90세 이상 남녀는 사미(賜米)하고 100세 이상은 면천(免賤)을 허락한 다음, 남자는 7품직을 제수하였으며 여자는 작(爵)을 봉하였다.⁶⁶⁾

60)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계묘조.

61)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계해조.

62)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신유조.

63) 위와 같음

64) 위와 같음

65)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 7월 병자조.

세종 17년의 이와 같은 기준은 동왕(同王) 26년 7월에 한층 더 구체화되어 양, 천을 구분하고 연령별로 80세 이상, 90세 이상, 100세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기준을 달리하여 제수하였다.⁶⁷⁾ 이와 같은 기준에서 문종대에도 80세 이상의 양(良), 천(賤)노인에 대하여 가자(加資)하였고⁶⁸⁾ 세조대에는 한층 더 확대, 발전되었다. 세조 5년에는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부연노인(赴宴老人)들에게 각각 일자(一資)를 가하게 하고 당하관의 최고 한계인 자궁(資窮)은 가자의 자격에 도달할지라도 자서제질손(子壻弟姪孫) 가운데 1인에게 대가(代加)토록 했으며 90세가 넘는 자는 자급을 뛰어서 제수할 수 있게 하였다.⁶⁹⁾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자급을 넘어 가자한 것은 세조대의 90세 노인과 100세 노인 중 7품 이상으로 한정하여 초자(超資)하게 한 것보다 한층 확대,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종 때는 해당 자궁자(資窮者)들이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자를 허락하였으나⁷⁰⁾ 항식(恒式)으로는 삼지 못했다. 중종 2년에는 대신의 요청에 의하여 자궁자(資窮者)도 당상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⁷¹⁾

한편 성종대에는 가자의 기준도 80세 이상인 자는 양(良), 천(賤)의 구분 없이 1자급을 더하고 원래 임직이었던 자는 거기에 1자급을 더하도록 하였으며 당상관은 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 가자토록 항식(恒式)으로 규정하였다.⁷²⁾ 이에 비해 중종대에는 양인에게만 가자하고 천인에게는 사물하여 우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³⁾ 그러나 인조대 이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0세 노인에게 양천(良賤)을 가리지 않고 가자하는 것이 상례로 되

66)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신유조

67) 『세종실록』 권105, 세종 26년 7월 을미조.

68) 『문종실록』 권8, 문종 원년 6월 을해조.

69) 『세종실록』 권17, 세종 5년 9월 경인조.

70) 『성종실록』 권195, 성종 17년 9월 갑자조.

71) 『중종실록』 권6, 중종 2년 3월 신유조.

72) 『성종실록』 권126, 성종 12년 2월 계묘조.

73) 『중종실록』 권18, 중종 8년 9월 무진조.

었다.⁷⁴⁾ 그리하여 현종대에도 경(京), 외(外)의 80세 이상 노인(老人)에게 사부(士夫), 상한(常漢)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히 가자하였고⁷⁵⁾ 숙종대에도 귀천의 구분없이 가자하여 그 인원이 무려 1만 수천 명에 달했다.⁷⁶⁾ 영조대에는 가자의 승품한계(陞品限界)에 구분을 두었고 『경국대전』 이후 『속대전(續大典)』 단계에 와서 상천(常賤)은 중1품인 송정대부직(崇政大夫職)을 제수하지 못하게 하고 정경(正卿:정2품)을 지낸 자만이 보국(輔國:정1품)에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⁷⁷⁾ 상민으로 노직이 정헌(正憲:정2품)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인 송정(崇政:중1품)에는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⁷⁸⁾

그 후 숙종 45년 와서는 숙종의 입사(入社)를 계기로 직(職)과 연령에 따라 가자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①경(京), 외(外)의 조관(朝官)이나 4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자로서 70세에 달한 자 ②5품 이하의 관직을 지낸 자와 일반사서(士庶)로서 80세에 달한 자를 대상으로 가자하도록 구분하여 실시하였다.⁷⁹⁾ 영조 23년 정월에는 왕이 자전(慈殿)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경축행사로서 숙종 때 가자한 예에 따라 조신(朝臣) 4품 이상으로 70세 된 자와 사서(士庶)로서 80세 된 자에게 가자하였다.⁸⁰⁾ 동년 7월에는 동조(東朝)의 칠순을 경축하기 위해 기로과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하여 가자하였다.⁸¹⁾ 정조 14년 6월에는 원자(元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조관 70세 이상과 사서(士庶) 80세 이상인 자에게 각각 1자급씩 가하였는데 그 대상이 된 숫자는 무려 25,810명이나 되었다.⁸²⁾ 고종 5년에도 동조(東朝) 주갑(周

74)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4월 신해조.

75) 『현종실록』 권19, 현종 12년 정월 무진조.

76) 『숙종실록』 권3, 숙종 원년 5월 계축조.

77) 『속대전』 권1, 아전 노인직조.

78) 『영조실록』 권101, 영조 39년 정월 을해조.

79) 『기사지』 권9, 무편 4 담은조(覃恩條).

80) 위와 같음

81) 위와 같음

甲)을 맞아 문신(文臣) 시종신(侍從臣)과 무신(武臣) 중 병(兵), 수사(水使)와 음관(蔭官) 3품에 준하는 직품(職品)과 의역관(醫譯官), 가선(嘉善) 이상으로 61세가 된 자에게 가자를 행하였다.⁸³⁾ 이상과 같이 왕실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가자 외에 왕의 지방행차나 능행(陵幸) 시, 그 지방 노인에게 대해 특별히 가자를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현종 6년 왕이 온양에 행차했을 때 온양 노인 박춘화 등 15인에 대해 가자한 예가 그것이다.⁸⁴⁾ 동왕 10년 5월에도 80세 이상 노인 정필 등 18인에게 가자한 일이 있었다.⁸⁵⁾ 고종 28년에도 왕의 능행 시, 양주지방의 80세 이상 노인에게 1등급씩 가자하였다.⁸⁶⁾

세종 28년에도 특별히 효행이 지극한 기신에게 효행을 표창하는 뜻으로 가선(嘉善:중2품)에서 자헌(自憲:정2품)으로 승자(陞資)시켜 궤장을 받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가자의 동기는 ①순수한 경로(敬老)의 정례 행사로서의 가자 ②왕실의 경사 축하를 계기로 한 가자 ③왕의 지방행차를 계기로 한 가자 ④입사자격을 갖추어 주기 위한 가자 ⑤효행표창을 위한 가자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자는 모두 노인우대정책으로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경로의 예우로써 행해진 가자행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국초부터 있었다. 세종 21년 전라도에서 90세 이상인 자 100여 인에게 가자를 할 때, 실제 나이를 속여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⁸⁷⁾ 그만큼 노직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우대를 받는 것인가를 입증하는 예가 되겠다. 그러나 조선시대 기로혜양책과 같은

82) 『기사지』 권9, 무편 4 담은조

83)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조, 고종 5년.

84) 『현종개수실록』 권13, 현종 6년 5월 신묘조.

85) 『현종개수실록』 권13, 현종 6년 5월 병오조.

86)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조, 고종 28년 5월.

87)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5월 기사조.

가자제, 즉 노인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은 현행제도상에는 없으며 시정 복호제 즉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병역, 부역 면제의 혜택도 없다. 다만 부선망(父先亡) 독자에게는 모(母)의 나이, 건강상태, 자산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급가자제는 현재 국가 공무원은 1년에 20일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영분, 시향복제의 휴가는 없다.

4. 기로소 설치(耆老所 設置)

1) 유래와 변천

조선왕조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비한 여러 제도와 의례 가운데 가장 특이한 발전을 보인 관제 중 하나가 기로소(耆老所)이다. 조선왕조는 이 기로소를 통해 일반 서로(庶老)가 아닌 노인들에 대해 경로의 예를 행하였다. 기로소는 참가계층이 정2품 이상의 고관직을 역임하거나 현직자 가운데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기신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경로책으로서가 아니었다. 기로소는 조선왕조 전반을 통해 엄존하여 경로행사의 중추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기로소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인조대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이 기로소에 관한 역대기록을 수집, 편찬한 것을 숙종대 서문중(徐文重)이 교정하고 이것을 영조초에 이의현(李宜顯)이 재편집하여 정리한 『기사제명록(耆社題名錄)』이 있다.⁸⁸⁾ 이후 정조대 서명응에 의해 『기사경회력(耆社

慶會曆』이 편찬되었다. 현종대에 홍경모는 이상의 모든 문헌을 집대성하여 『기사지(耆社志)』를 편찬하였다.

기로소의 연원에서 기로소의 기신(耆臣)모임과 관련하여 가장 오랜 고사는 중국 당, 송의 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당(唐) 회창연간(會昌年間)(841~846)에 백거이(白居易)를 비롯한 7명의 치사자(致士者)들이 낙양에서 칠로회(七老會)를 사사로이 조직하였고 그 후 노인 2명이 더 가입하여 구로회(九老會)로 정착되었다. 한편 송(宋) 지화연간(至和年間)(1054~1055)에는 준양(淮陽)에 사는 사연(社衍)을 비롯한 5인의 노인이 5로회(五老會)를 조직한 바 있고 원풍연간(元豐年間)(1078~1085)에는 낙양에 사는 문언박(文彦博)과 하마광(河馬光)을 비롯한 13인이 기영회(耆英會)를 조직했다고 전하고 있다.⁸⁹⁾ 우리나라에서 이 당, 송 고사를 모방하여 기영회(耆英會)가 조직된 것은 고려 희종대에 평장사(平章事)로 치사한 최당에 의해서다.⁹⁰⁾ 그는 치사한 후 자신의 내거지(內居地)를 쌍명재(雙明齋)라 칭하고 여러 치사자들과 함께 기영회를 조직했다고 한다.

고려조에서는 2품 이상 관직에서 치사한 후 재추치사신(宰樞致仕臣)들이 치정재추소(致正宰樞所)의 구성원이 되어 공경(公卿), 기로(耆老)로서 정사를 자주 의논하였다.⁹¹⁾ 충혜왕(忠惠王) 당시는 중서성(中書省)에 올리는 국서도 이를 국로가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불참할 경우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⁹²⁾ 공민왕 때는 환도(還都)를 둘러싼 의론이 기로들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고⁹³⁾ 우왕 때는 산성을 수축하고 전함을 수선하는 군사적 정사에도 기로들이 참석하여 논의하였다.⁹⁴⁾ 특히 같은 사건을 기록한 『고려사절

88)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혜안, 2000, 111쪽.

89)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혜안, 2000, 113쪽.

90) 『고려사』 권36, 충혜왕 5년 정월 무진조.

91) 『고려사』 권34, 세종 충선왕 5년 3월 갑인조.

92) 『고려사』 권36, 충혜왕 5년 정월 무진조.

93)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2년 정미조.

요(高麗史節要)』에는 이 기영회가 기로회(耆老會)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보건대 기로회와 기영회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 기로에 관한 기록에는 “종실공후재추급기로서신(宗室公侯宰樞及耆老侍臣)”⁹⁵⁾ 혹은 “종실기로대성육조(宗室耆老臺省六曹)”⁹⁶⁾ 등의 말이 나오는데 이는 곧 종실재추기로(宗室宰樞耆老)들이 치성재추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정치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치정재추소(致正宰樞所)는 이성계가 권력의 최일선에 등장하면서 구성원 가운데 종신세력(宗臣勢力)이 제거되고 대소신료한량기로(大小臣僚閑良耆老)들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된다.⁹⁷⁾ 이성계는 종신세력이 제거된 이 치정추재소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즉위 6년에는 “대소신료한량기로(大小臣僚閑良耆老)” 대신 “도당각사기로회(都堂各司耆老會)”⁹⁸⁾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보이는 도당(都堂)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약칭으로서 조선이 개창된 후에도 국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존속하였다. 이 도당에는 문하부(門下府), 3사(三司), 중추원(中樞院)의 중2품 이상 고관이 참석하였는데 도당각사급기로회라고 한 것은 바로 기로회가 이 도평의사사와 동등한 정치적 위치에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듬해 태조 7년 국호를 결정하고 여러 정사를 의논할 때 도평의사사와 기로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 사례⁹⁹⁾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태조대의 기로소는 엄연히 의결기관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처럼 강력한 위상을 갖추었던 기로소는 태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변혁

94) 『고려사』 권49, 신우왕 13년 11월조.

95) 『증보문헌비고』 권75, 예고22 가례조, 공민왕 6년 4월.

96)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2년 정미조.

97)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유조.

98)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1월 신사조.

99)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5월 임술조.

과 함께 성격의 변화를 보게 된다. 먼저 태종은 기로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기로회를 연회적(宴會的)인 것으로 변질시켰다. 또 태종은 이를 아문(衙門)으로 흡수하여 그 위치를 크게 격하시켰다. 그 역할도 국정의 의결이 아니라 정조(正朝), 탄일(誕日) 등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하례를 하는 정도로 격하시켰다.¹⁰⁰⁾ 그 후 세종대에 와서 기로회는 예조의 상언(上言)과 변계량(卞季良)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로소로 정식 호칭되었다.¹⁰¹⁾ 소(所)란 5, 6품의 비치사지사아문(非致仕之司衙門)¹⁰²⁾으로서 정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직위이다. 그 직위가 크게 격하되어 성격이 변질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권근의 『양촌집(陽村集)』에 실린 ‘후기영회서(後耆英會序)’에서도 당, 송과 최당의 고사를 예로 들어 이것을 기영회의 시초로 보고 있다. 기영회의 입사 자격은 70세 이상의 덕(德), 작(爵)을 갖춘 인물이라야 하고 정승 이상의 관직을 지낸 자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입회할 수 있었다. 당시 참가자 명단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명	관직	연령	성명	관직	연령
최 희	검교, 의정부 좌정승	86	김사영	상락부원군	64
이중화	영위정부사지사	83	조 준	영의정부사	59
이 서	영위정부사치사	73	하 룬	의정부 좌정승	58
성석린	의정부 정승	67	이거역	영사평부사	57
민 제	여흥부원조	66	이 무	영승추부사	50

<표 1> 태종대 기영회 참가자

“태조 3년 갑술춘추육십, 이도한양, 잉입기로소사어휘우서루벽상, 호이사창, 연기영군신, 특이어필, 사토전장호염분등물, 이침지(太祖三年甲戌春秋六

100) 『태조실록』 권14, 기편5 낙사고사조.

101) 위와 같음

102)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갑술조.

十，移都漢陽，仍入耆老所寫御諱于西累壁上，護以紗窓，宴耆英君臣，特以御筆，賜土田藏護鹽盆等物，以瞻之。” 이 기사는 태조가 재위 3년에 60세가 되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기로소에 들어가 어휘를 서쪽 누각벽(樓閣壁) 위에 쓰고 비단창을 끼워 보호하였으며 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어필로 써서 토지, 노비, 염분 등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윤리규범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자인 군왕은 기로소를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이 문제는 기로소의 위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원래 중국 당나라의 사적 모임인 기영회를 모방한 데서 출발한 기로소에 대해 태조 이성계는 연로(年老)한 재추(宰樞)들로 조직된 공적인 관사로 간주하였다.¹⁰³⁾ 태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입소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사하여 양로의 예를 행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곧 군왕의 경로지심(敬老之心)에서 나온 시책이었다. 기로소가 갖는 이러한 경로의 의미는 숙종의 입사에서도 말할 수 있다.

숙종의 입사는 경로존년(敬老尊年)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군신동락(君臣同樂)을 의미하여 효교(孝教)로써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바로잡고 경효(敬孝)로써 웃어른을 섬기는 기풍을 일으키며 인교(仁教)로써 화목하는 풍속을 이룬다. 또한 태조가 행한 입사(入社)의 궤(軌)를 따른 것을 큰 효로 보고 존이능비(尊而能卑), 존이능굴(尊而能屈)한 것을 지극한 경로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기로소를 경로효친과 대인교화의 기구로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로소를 경로지소(敬老之所)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에 역대 군왕들은 기로소 입사 문제를 신중히 대처하였다. 숙종의 경우 태조가 기로소에 입사한 이후 다른 군왕이 입사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입사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왕자와 종신들의 끈질긴 설득과 요청으로 입사하고 있

103) 『기사지』 권1, 갑편 기소입사.

다.¹⁰⁴⁾ 이는 군왕이 기로소 입사 문제에 대단히 신중하였으며 기로소가 경로회로서의 성격이 짙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경로적 의미가 큰 기로소였기 때문에 군왕의 입사 연령으로서 60세 기준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졌다. 숙종의 59세 입사 때 논란이 있었고¹⁰⁵⁾ 영조의 51세 입사 때 김재노(金在魯)는 상소를 올려 극구 반대하였는데 표면상 쉰 살이 겨우 지난 군왕에게 기로의 칭호를 올리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면서도 선왕 가운데 태종, 세종, 세조, 중종, 선조 등이 입사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든 것을 보면 태조 60세 입사(入社)의 전례를 지키라는 요구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지평 박성원도 영조의 입사에 대해서 “성이조종고사, 자유정기고야(誠而祖宗故事, 自有定其古也:정정스럽게 조상을 모신 그 곳은 자기가 정한 옛날의 땅)”라 하면서 인군(人君)의 입사지규(入社之規)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¹⁰⁶⁾

이러한 입사논란은 기로소의 경로회소(敬老會所)로서의 막강한 위상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군왕의 기로소에 대한 경로회소로서의 인식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역대 군왕은 기로소의 영수각에 나아가 친히 제호(題號)하는 절차를 엄숙히 준행하였으며¹⁰⁷⁾ 입사 후에는 기로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잊지 않았다. 특히 영조는 즉위 32년 7월 3일 기로소에 행차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선온(宣醞)하는 자리에서 이종성에게 “근일만사개무심, 이독기사권권의(近日萬事皆無心, 而獨耆社眷眷矣:가까운 날 모든 일 생각지 말고 홀로 계시는 노인을 모시고 돌보라)”¹⁰⁸⁾고 하여 기로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영조가 입사한 이후 12회나 노구(老軀)를 무릅쓰고 행차한 것¹⁰⁹⁾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104) 『기사지』 권4, 정편1 입사기사 연설

105) 『기사지』 권4, 정편1 입사기사 연설

106) 『기사지』 권6, 술편1 기사제신 진잔사은, 영조 32년 7월조.

107) 『기사지』 권4, 정편1 입사기사 진연의

108) 『기사지』 권6, 술편1 기사제신 진잔사은, 영조 32년 7월조.

기로소의(耆老所)의 변천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말 이래 항존(恒存)했던 기관이다. 태조가 입사한 것은 즉위 3년만의 일이다. 그 후 재위 7년째인 65세 되는 해에 정종(定宗)에게 왕위를 양위하였다. 이 기간은 평화로운 기간이 아니었다. 정도전이 개국공신으로서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병권과 정권을 장악하고 세자 방석을 지지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방원(태종) 일파가 소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역성혁명을 일으켰다. 이 역성혁명으로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많은 개국공신이 몰락한 반면 태종 편에 서서 역성혁명 성공에 공헌한 사람들은 정종이 즉위한 다음, 다음달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책봉되었다. 정사공신 총 29명 가운데 종친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을 보면 이백경, 조준, 김사형, 이무, 조박, 하륜, 이거역, 조영무 등 8명이다.¹¹⁰⁾ 역성혁명 2년 후 이미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방원은 정종의 뒤를 이어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태종은 태조 재위 8년(1408년) 승하하기까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태조가 고려 말 권력의 일선에 등장하여 왕조를 창업하기까지 기로회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태종이 부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던 이들 기로를 배척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로들과 왕권과의 관계는 미묘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종대에 이르러 기로소의 인적구성이 친태종 중심으로 재편되었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기로소의 자문적 역할에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태종대 기로소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

하나는 당시 명나라와 관련한 외교적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문제와 관련한 이해가 그것이다. 먼저 명나라와 관련하여 볼 때 당시 조선은 고명

109) 『기사지』 권4, 정편1 입사기사 참조.

110)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83, 21쪽.

(誥命)과 인장(印章)을 명나라로부터 승인받아야 했기 때문에 태종 역시 적극적으로 대명관계를 주도할 수 없었다. 특히 태종 2년 요동의 임팔자실리(林八刺失里)에서 사병, 토병 3천여 명이 명나라를 배반하고 조선 강계(疆界)에 입국하기를 청하는 문제에 직면했는데 당시 태종은 한량기로(閑良耆老)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케 하였다. 한편 대외관계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기로들은 대내관계에서도 그들의 정치적인 자문 역할을 계속 증대시켰다. 태종 3년 6월 경상도의 조세를 육로로 운반할 것인지 수로로 운반할 것인지의 문제,¹¹¹⁾ 태종 4년 한양에 도읍을 정하는 문제,¹¹²⁾ 태종 6년 사사혁거(寺社革去)와 사사노비(寺社奴婢)의 속공(屬公)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문제로 인하여 태종은 삼부(三府)의 기로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태종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로회의 창설을 의도하였다. 또 태종은 기존의 기로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사적인 성격의 기로회 탄생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 역할도 연회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종 10년 기사에서는 이를 아문(衙門)의 설립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다. 즉 기로회는 도당회의(都堂會議)와 함께 조종을 그 소(所)로 삼았는데 태종이 비로소 아문으로 흡수하여 그 위치를 크게 격하시켜 국정(國政) 의결기관이 아니라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하례를 하는 정도로 격하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기로회가 아니라 기로소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소(所)에서는 5, 6품 아문으로서 나라 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닌 성격이기¹¹³⁾ 때문에 도평의사사와 같은 지위에서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지위로 격하된 것을 의미하며 이후 그 성격이 크게 변질되었다. 이처럼 기로소

111)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신해조.

112)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7월 기유조.

113)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갑술조.

의 위상이 태종의 왕권강화책의 영향으로 크게 격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로소의 구성원이 군왕(君王)이하 2품 이상의 고관직을 역임한 치사자들로 되어있음을 볼 때 영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조선왕조에서 2품 이상 관(官)이라고 하면 고려시대의 재추회의 유제(遺制)인 중신회의에 참여하여 국정을 의결할 수 있는 정책입안자였을 뿐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기로소에 소속되어 자문에 응하는 등 정치적 역할을 계속하였다.¹¹⁴⁾ 이렇다면 역시 기로소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로소(耆老所)의 운영(運營)에 관해서 알아보면 기로회는 고려 말~조선 태조대까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었으나 태종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성격의 기로회가 창설되고 이 기로회는 아문(衙門)인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로 격하되었다가 세종 10년에 기로소로 변천하였음을 보았다. 이 기로소는 운영상 독특한 발전을 보이면서 조선 후기,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다.

기로소의 규모와 관리로는, 기로소는 한성중부징청방(澄清坊)에 위치하였다. 『기사지』에는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여 “기로소 재중부징청방(耆老所 在中部澄清坊) 2품 이상 년 70자 상회지소(相會之所)”¹¹⁵⁾라고 하였는데 중부 징청방은 지금 중앙청 광화문동의 동쪽로에 근대까지도 기로소가 있었으나 그 이후 도시계획에 의해 사라져 그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

2) 운영실태

114)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5, 93쪽.

115) 『기사지』 권1, 갑편 관정조.

기로서는 예조에서 관할하였는데 치사한 정2품 이상의 연로자들이 서로 모여 여생을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입사자들은 특별한 직사(職事)가 없었고 직명은 기로서 당상이라 칭하였다.¹¹⁶⁾ 기로서 운영에 대한 정비는 임진왜란 이후 숙종, 영조대에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대부분의 운영규칙도 이 때 개정되었다. 기로서의 직무는 입사한 기로서 당상 가운데 수당(首堂)이 있어서 모든 일을 6조의 관당례와 같이 상의하여 관장하였다. 그리고 기로서의 제사(諸事)에 관한 업무는 예조판서가 대신에게 문의하도록 하되 반드시 절목(節目) 형태를 거쳐 거행하도록 규정하였다.¹¹⁷⁾ 또 기로서의 입사절차(入社節次)로써 역대 군왕(君王)과 기신(耆臣)들은 태조의 갑술입사(甲戌入社) 고사에 따라 입사하였다.¹¹⁸⁾ 태조가 입사한 나이는 60세이고 기신(耆臣)은 70세로서 정경(正卿) 이상을 지낸 자만이 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대 군왕들이 입사할 때 반드시 이 입사기준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태조가 입사한 이후 300여년 만에 군왕으로서 입사한 숙종은 당시 나이 59세였다. 한편 기신(耆臣)들의 입사도 직(職)과 연령의 기준이 반드시 준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역대 군왕의 장수는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태조가 입사한 이후 조선왕조의 군왕 가운데 기로서에 입사한 예는 숙종과 영조 및 고종이 전부였다. 태조 입사 이후 300여 년간이나 군왕의 입사 사례가 없어서 숙종의 입사는 제군(諸君), 제신(諸臣)과 기로서의 끈질긴 상소에 의해 실현되었다. 숙종이 입사를 강력히 거절한 이유는 태조의 입사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없었기 때문이다.¹¹⁹⁾ 그리고 입사절차를 보면 왕이 친히 영수각

116) 『기사지』 권1, 직관조.

117) 『기사지』 권1, 편목조.

118) 『기사지』 권13, 기편.

119)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혜안, 2000, 137쪽.

에 이르러 전배(展拜)하고 그 곳에서 어첩(御帖:임금이 쓴 글)에 제명(題名)한 케장(几杖)을 받으며 그 후 종묘에 입사를 알리는 고묘 행사를 하고 태조가 연기영군신(宴耆英君臣), 특이어필(特以御筆) 사(賜)하고¹²⁰⁾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면서 군신(君臣)이 함께 즐겼다. 이 기로연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양로연의(養老宴儀)’에 따라 경현당(景賢堂)에서 성대하게 열렸는데 이 날 기신(耆臣) 10인을 초대하여 하루 종일 군신이 함께 즐기고 과거(科擧)와 노인가자(老人加資)도 함께 시행하였다.¹²¹⁾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기사계첩(耆社契帖)이다. 한편 숙종이 59세 되던 기해년에 입사한 것은 60 입(入) 기로의 선례를 깨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한편 영조대에 들면 이 같은 숙종의 입사 선례를 선조의 예로써 모방하게 된다. 조현명은 숙종의 59세 입사를 예로 들면서 영조의 51세 입사도 망(望) 육임을 들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¹²²⁾ 이에 대해 김재로는 상소를 올려 적극 반대하였다.

숙종과 영조가 50대에 입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종대에 와서도 51세에 이미 입사상소가 있었다. 고종은 이 같은 상소에도 허락하지 않다가 황태자의 간곡한 주청에 따라 비로소 입사를 허락하였다.¹²³⁾ 고종도 광무 6년(1902) 3월 27일에 입사하면서 선왕의 관례에 따라 절차를 행하고 영조의 갑자고사(甲子故事)에 따라 진연(進宴)을 받고 사물(賜物)하였다.¹²⁴⁾

한편 기사(耆社)의 입사는 인격(德), 나이(齒), 벼슬(爵)의 3요소를 갖춘 자라야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사자격을 당상관(堂上官) 문신(文臣)으로서 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거치고 70세 이상인 자¹²⁵⁾로 한정하였

120) 박상환, 앞의 책, 138쪽.

121) 『숙종실록』 권63, 숙종 45년 2월 병진조.

122) 『영조실록』 권59, 영조 20년 7월 갑진조.

123) 『증보문헌비고』 권215, 직관고2 기사조.

124) 『증보문헌비고』 권77, 예고24 조의조, 광무 6년.

125) 『기사지』 권1, 갑편 직관조.

고 음직(蔭職), 무직(武職) 출신자에게는 입사 자격을 주지 않았다.¹²⁶⁾ 이처럼 입사자격이 엄격해진 것은 조선 중기 이후 신분질서가 재편, 확립되는 시대 성격의 영향일 것이다. 그런데 입사자격을 갖추고도 입사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는 ①향직(鄉職)에 있었기 때문에 입사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¹²⁷⁾ ②상중(喪中)으로 입사기회를 놓친 경우¹²⁸⁾ 등이 있었다. 한편 기로소의 입사는 기신(耆臣)들에게는 최대의 영광이며 은전이었고 할 수 있고, 기로소의 입사자는 곧 문관 고관과 동일시되었다.

기로소의 입사자격이 차츰 문신(文臣)으로만 한정된 것은 70세 이상의 고관이 대부분 문관 출신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에 조선 성리학이 토착화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기로소 입사신(入社臣)의 실태로는 입사자격을 갖추고 관직과 천수를 누린 자로서 기로소에 입사한 기로들은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으로 호칭되었다.

그리고 기로연 개최에 들어가는 비용과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태조 3년에는 태조가 기로소에 참석하여 토지, 노비, 어염을 사여(賜與)하여 운영 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기로소가 아문으로 바뀐 후에는 공해전(公廩田) 100결, 노비 50구(口), 서제(書題) 20명을 지급하였다.¹²⁹⁾ 이는 다른 아문의 재정을 위해 지급된 공해전(公廩田)의 지급상황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큰 규모였다.

각사명	공해전 지급	각사명	공해전 지급
부마부(駙馬府)	250결(結)	제생원(濟生院)	30결(結)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100결	전의감(典醫監)	30결

126) 『문헌비고』 권215, 직관고2, 영조.

127) 『기사지』, 부별편.

128)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0, 147쪽.

129)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2월 신유조.

도서원(圖書院)	30결	동활원(東活院)	25결
충호위(忠扈衛)	100결	서활원(西活院)	30결
혜민국(惠民局)	20결	사역원(司譯院)	80결

<표 2> 각사(各司) 공해전(公廩田) 지급 규모

공해전은 세종 27년 국용전제(國用田制)가 실시될 때 재정의 일원화를 위해 혁파되었지만 그 가운데 부마부(駙馬府)와 기로소 공해전만은 혁파대상에서 제외되었다.¹³⁰⁾ 그러나 기로소 공해전도 세조 10년에 혁파되면서 기로소의 재정은 예빈사(禮賓寺)에 합치되었다.¹³¹⁾ 기로소는 공해전 수입 외에도 각 지역의 진기전(陳起田)에서 나오는 수입과 어염수입 그 밖에 잡세수입을 수세(收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기로소의 재정은 임진왜란으로 등록(騰錄)이 소실되면서 수세지역의 파악이 어려워지고 게다가 당대의 실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도감에 의해 토지가 탈점되면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기로소 재정은 고정적인 수입원로서는 둔전토(屯田土)의 세금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둔전토는 생산성이 적은 척박한 토지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대부분의 토지가 진기전(陳起田)으로 개간한 것이라 그 사용에 따라 수세(收稅)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조 원년에 기로소 재정이 재정비되었을 때 대부분 결 당, 수세에서 벗어나 세액을 통괄하여 수세하였다(기로소 소속의 전지(田地)는 면세전).¹³²⁾ 한편 점차 세입원을 잃어가던 어(魚)염, 전세(船稅)도 균역법의 시행과 함께 균역청에서 거두어 매년 1천 냥 정도를 기로소에 대송하였다.

한편 파주(波州)에서는 유일하게 시장세를 거두었는데 매월 전(錢) 4냥 5전으로 하여 총 10개월간 45냥의 수입을 올렸다. 수안에서는 상정전(詳定

130) 『세종실록』 권109, 세종 27년 7월 을유조.

131)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정월 계미조.

132) 『문헌비고』 권149, 전부고9, 영조 5년조.

錢) 100냥을 거두었다. 그리고 기로소에 소속된 노비 300구(口)에게 매년 노공(奴貢)으로 1필(疋) 반, 비공(婢貢)으로 1필을 수세하다가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균역청에서 대신 전 392냥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타 잡세로 거둬들인 시장세(市場稅), 상정전(詳定錢), 노비공(奴婢貢) 등의 수입은 총 537냥이었다.¹³³⁾

그러나 이 같은 수입만으로는 기로소의 소요재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다.

3) 경로행사

기로소의 행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퇴(老退)한 기신(耆臣)들의 여생 양육이었다. 이와 관련한 주요행사는 사연(賜宴)과 사물(賜物)로 대변할 수 있는데 특히 사연(賜宴)행사로 군신상회(君臣相會)의 뜻을 갖는 기로소(耆老所) 및 궁내에서 실시하는 기로연(耆老宴)과 3월 3일, 9월 9일 등 가절(佳節)에 행하는 외연(外宴) 성격의 기로연이 있다. 다음에서는 군신상회연(君臣相會宴), 기로연과기영회, 사물(賜物)과 도상(圖像) 등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군신상회연(君臣相會宴)은 태조가 입사할 때 서루(西樓)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고사에 따라 숙종과 영조도 입사 이후 기로제신(耆老諸臣)을 위한 잔치를 자주 베풀어 군신(君臣)의 경회동락(慶會同樂)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경회(慶會)는 군왕이 기로소의 여러 신하를 불러 잔치를 베푸는 형식이었으니 군왕이 베푸는 최대의 경로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는 영조 이후 정조와 순조를 비롯하여 후대의 제왕들이

133) 『기사지』 권7, 무편2 당로운례, 영조 34년 11월 10일조.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군신상회연(君臣相會宴)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연회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군신상강회(君臣相講會)이고 다른 하나는 노년회(老年會)이다. 군신상강회는 군왕이 평생 생활하는 신민(臣民)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는데 주로 기로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기로연은 보통 어전(御前)에서 노성한 기신들이 자리하여 열렸는데 유학 경전의 독해 및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군신상강(君臣相講)에 쓰인 경서(經書)는 『대학(大學)』, 『소학(小學)』, 『중용(中庸)』, 『대학연의(大學衍義)』, 『열녀전(烈女傳)』 등 주로 치도(治道)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왕이 신하에게 차례로 독서케 한 다음 대의(大義)를 물어서 토론하였다.

노년회는 궁중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군왕이 경로지심(敬老之心)이 생길 때 모든 기신들을 불러서 노년의 정담을 나누면서 인생의 만년을 달래는 연회였다. 역대 군왕들이 기로연에서 기신과 대화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나이와 기력에 관한 것이었다. 군왕이 신하에 대해 침식보행(寢食步行)까지 묻는 것은 군왕이 신하에 대한 최대의 경로 표시였다. 원래 연회는 그 성격상 기로소에 입사한 기신과 노성신(老成臣)에 대한 사연이었으므로 가장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역시 경로회라고 하겠다. 역대 기로회를 통해서 볼 때 경로적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군신이 모여 연회를 가질 때마다 군왕은 기신에게 특별히 귀한 물품이나 양식을 하사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때 사물은 초모(貂帽), 실과, 백(帛), 반숙마(半熟馬), 표리(表裏), 구마(廐馬), 아마(兒馬), 인삼, 초피(貂皮) 등 귀한 진품들이고 연회에서 베푸는 음식은 미육(米肉), 죽(粥), 면(麵), 과당, 실과, 전유어(煎油魚), 편육, 주(酒) 등으로 노인에게 알맞은 음식이었다. 숙종과 영조가 입사할 때는 특별히 은배(銀盃)와 은병(銀瓶)도 각각 하사하였다.

부득이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신에게는 그 집으로 사물을 보냈으며 연

상(宴床)에서 남은 음식은 동행한 자손이 싸가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¹³⁴⁾ 한편 연회에서 군왕이 기신을 대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추울 때는 노약한 노인을 먼저 퇴청케 하고 노구(老驅)를 염려하여 연회의 개최시간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왕 앞에서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노인에게는 자손의 부축을 받도록 하였으며 연회의 좌석도 관직 순이 아니라 연령 순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인 우대책은 곧 철저한 경로의 표시를 반영한 경우가 되겠다. 그 밖에 연회의 주요행사로써 대사례(大射禮)를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문무 2품 관으로 70세 이상인 기로대신(耆老大臣)들이 국왕과 함께 대사례를 갖는데 활쏘기 성적에 따라 우수한 자에게는 활을 하사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자는 벌주를 내렸다. 그리고 기로연과 기영회(耆英會)는 군신상회연(君臣相會宴) 외에 기신(耆臣)들에게는 따로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이는 크게 기로연(耆老宴)과 기영회(耆英會)로 구분된다.

연회는 3월 3일과 9월 9일 각각 춘추로 나누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로연은 보제루에서, 기영회는 훈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격도 기영회에는 70세 이상으로 정2품 이상인 종재(宗宰)와 경연당상이 참석했다. 기로소가 주최하는 이 연회에는 당상직의 모든 시(時), 산관(散官)이 참석했다.

그리고 『태종실록』에 따르면 그 후 4월 기사(己巳) 17일에 이거역이 기로회를 베풀고 태종이 여기에 술을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¹³⁵⁾ 이것이 조정에서 술을 내려 경로의 예를 행한 최초의 사례다. 이후 기로소가 설립되면서 춘추로 연회가 개최되었다. 연회가 정례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세종대로 추측된다. 즉 세종 15년 우의정 유관은 시, 산관 1, 2품 가운데 나

134) 『기사지』 권6, 무편1 담로은례조 명기사 체신사연.

135)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기사조.

이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기영회를 조직하여 옛 성덕(聖德)을 노래할 것을 청하였으며¹³⁶⁾ 신사(申事) 안중선도 세종의 물음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 일이 없고 늙은 신하들이 회(會)를 만들어서 성덕을 노래하고 읍조리니 술과 실과를 하사하여 양로(養老)하는 은혜를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¹³⁷⁾

라고 하여 기로의 모임을 갖추고 주과(酒果)를 내려 기로를 공양하는 은혜를 베풀 것을 상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로들의 사사로운 모임에 술을 내리는 예는 조선조 초기부터 있었고 이것이 세종대에 와서 관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설행된 기로연, 기영회는 성종 이후 그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이는 기로연의 참가자격이 정승을 지낸 자와 2품 이상으로 70세가 된 자는 실직자와 산직자(散職者)를 막론하고 허용되어¹³⁸⁾ 기영회의 참가자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국가에서 기로연을 베풀 때 궤장(几杖)을 수여하여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따라서 궤장이 수여될 때는 당연히 기로연이 아울러 베풀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성종대에 이르러 두드러지는데 이를 계기로 기로회와 기영회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산군 이래 흉년으로 인하여 모든 연회가 중지되었을 때도 오직 기로연만은 그 중요성이 참작되어 계속 개최되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인조 원년 이원익에게 궤장(几杖)을 내리면서 다시 부활되었다.¹³⁹⁾ 한편 이와 같은 관(官) 주도의 연회 외에 사적(私的)인 기로회도 있었다. 이는 매월 윤회(輪回)로 한번 돌면 다시 차례가 되었으며

136)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정월 계유조.

137)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정월 갑술조.

138) 『성종실록』 권34, 성종 4년 9월 정유조.

139) 『기사지』 권9, 무편4 사연, 인조 원년 계해 9월조.

오락으로는 관연(官宴)과 같이 활을 쏘거나 바둑을 두고 혹은 시를 지으면서
서 종일 즐겼다.

연회에 연수(宴需)가 하사된 것은 태종대 이거역에 의해 개최된 기영회가
처음이고 단종 2년 3월 교외에서 베풀어진 기로연에는 주악(酒樂) 외에
특별히 미(米) 15석, 면포 20필을 내려주어 연비(宴費)로 쓰게 하였다.¹⁴⁰⁾
이러한 연수(宴需)의 하사는 세조대에 승지를 파견하여 관사(官司)로 하여
금 사냥한 짐승으로 선운을 베풀어 위로하면서 본격화되었다.¹⁴¹⁾ 성종 21
년 9월에는 기영연에 별조궁(別造弓), 표피(豹皮), 백록피(白鹿皮) 각 2장,
노구(爐口) 1부, 호초(胡椒) 10두(斗)를 하사하고¹⁴²⁾ 중종 2년 9월 기영회에
녹피(鹿皮), 별조궁(別造弓), 마장(馬裝), 호피(虎皮) 등을 별사(別賜)하여¹⁴³⁾
기영회의 경로적 의미를 높였다. 연회는 4일씩 계속 개최되기도 하였는
데¹⁴⁴⁾ 이 또한 그 중요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로연의 연회의
예가 끝나면 서로 편을 갈라 투호(投壺)놀이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투호의
(投壺儀)에 의해서 훈련원 연장(宴場)에서 실시된 투호놀이는 당중(堂中)에
호(壺)병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화살을 던져 넣어 승부를 가리는 놀이다.
즉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서서 청시(靑矢)와 홍시(紅矢)를 병 속에 던져 넣
은 뒤 들어간 수효를 세어 승부를 결정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로들이 여
흥삼아 한 것으로 훈련원 6품원(六品員)과 참외원(參外員)이 주관하였
다.¹⁴⁵⁾ 승부가 나면 진 사람은 술잔을 들어 이긴 사람에게 주고, 이긴 사람
은 이를 읊하고 서서 술을 받아 마셨다.

이때 풍악을 울려 흥을 돋우었는데 낙양춘곡(洛陽春曲)이 연주되었다. 연

140)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갑인조.

141)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임신조.

142) 『성종실록』 권244, 성종 21년 9월 무자조.

143) 『중종실록』 권4, 중종 2년 9월 기유조.

144) 『기사지』 권9, 무편4 무로성진 사연, 성종 4년 계기9월조.

145) 『성종실록』 권106, 성종 10년 7월 계미조.

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서서 족도(足踏)하며 투호가사(投壺歌詞)¹⁴⁶⁾를 부르고 각각 차례대로 잔을 전해서 반드시 취한 뒤에야 놀이를 그만두고 날이 저문 후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¹⁴⁷⁾ 게다가 이 놀이가 행해질 때면 평상시의 연회와는 달리 왕이 주악 이외에 값진 궁(弓), 표피, 녹피(鹿皮), 호피(虎皮), 마장(馬粧) 등의 별사물(別賜物)을 상품으로 내려 연회의 흥을 더욱 돋우었다.¹⁴⁸⁾ 그리고 중종대에는 연회(宴會)가 끝나면 꽃을 꺾고 돌아가는 성사(盛事)¹⁴⁹⁾도 있었다. 그리고 도상(圖像)과 사물예우(賜物禮遇)는 군신이 상회하는 연회를 후손에게 영구히 남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신상(耆臣像)을 도상(圖像)하여 작첩(作帖)하는 예가 자주 있었는데¹⁵⁰⁾ 기로소에서도 특별히 기신들을 우대하기 위해 그들의 초상을 도상하여 기로소에 봉안토록 하였다.

그리고 기신(耆臣)의 도상(圖像)에 소요되는 비용은 처음에는 국가의 지원 없이 기로소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나 도상이 자주 행해지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게 되면서 경비 부담이 커지게 되어 호조의 지원을 받았다.¹⁵¹⁾ 순조 8년에 와서는 소요경비의 지급이 규식(規式)으로 정해졌다.¹⁵²⁾ 이렇게 만들어진 기신의 도상은 기로소에 도첩(圖帖)을 만들어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기신(耆臣)에게도 나누어 주어 진가(鎭家)의 보물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난을 당할 때 기사(耆社)에 보관하였던 도상을 분실당할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었다.¹⁵³⁾ 한편 조선왕조에서 기로정책의

146) 『약학궤범』 권2, 세종조 회례연의. 『기사지』 권9, 무편4.

147) 『기사지』 권9, 무편4 우로성전 사연, 세종 14년 임자조.

148) 『성종실록』 권244, 성종 21년 9월 병진조.

149) 『중종실록』 권99, 중종 37년 9월 병진조.

150) 『기사지』 권7, 무편2 잠로운례, 영조 36년 1월 20일조.

151) 『기사지』 권9, 무편4 도상.

152) 『증보문헌비고』 권215, 직관고2, 기사조.

153) 『영조실록』 권88, 영조 32년 8월 을묘조.

일환으로 시행된 기신도상은 회화사적(繪畫史的) 면에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 이후 새로운 문화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학문과 예술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져 갔다. 따라서 국초부터 회사(繪事)를 맡은 도화서(圖畫署)가 설치되면서 궁정 화가들이 양성되고 이에 뛰어난 직업 화가들이 도화서에 모이게 되었다. 특히 조선왕조에서는 역대 왕의 어진(御眞)제작을 비롯해서 공신(功臣)을 도상하는 유제(遺制)와 조상의 진영(眞影)을 봉안하는 유행 때문에 수준 높은 초상화가 계속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대 배경 아래서 도화서(圖畫署) 회원들에 의해 초상화는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다.¹⁵⁴⁾ 또 기로소가 연회를 베풀 때 기신들에게 내리는 혜양지수(惠養之需)는 물론 기로소 소유의 수세전(收稅田)에서 충당하였지만 필요한 경우 특별히 외읍(外邑)에서 구하여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건들은 매월 또는 생신 및 절일(節日)에 혜양지수(惠養之需)로서 하사되었다.

이러한 선사물(宣賜物)은 태조 이래 역대 왕들에 의해 하사되었는데 특히 숙종과 영조가 입사한 이후에는 이러한 경로의 예를 풍족하게 행하였다. 혹 재원이 감소되고 기로소 수입이 박해져¹⁵⁵⁾ 연회를 베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물(賜物)만은 분송(分送)하여 경로의 예를 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때 기로소가 분봉한 사물은 쌀죽, 약채, 의자(衣資), 쌀, 앵도, 역서(曆書), 세곡(稅穀), 목면(木棉), 당상부인치부(堂上夫人致賻) 등이 있다. 이 분봉사물의 시기와 종류, 수량 및 분봉의 변화 등을 보면 기신에 대한 양로혜양(養老惠養)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죽미(粥米)는 매삭(每朔)에 10두씩 지급하였는데 기당원수(耆堂員數)에 따라 지급량을 가감하고 부족할 때는 전(錢) 4냥으로 대급하였다. 약채비(藥

154)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0, 200쪽.

155) 박상환, 위의 책, 206쪽.

債費)는 매삭(每朔)에 10냥씩 지급하다가 후에 5냥으로 축소시켰다. 의자(衣資)는 동절(冬節)에 매인당(每人當) 전 6냥씩 지급하다가 신축년(정조5년, 1781년) 이후에는 총 비용 전 150냥과 탄면화(彈綿花)로 나누어 분송하였다. 미(米)는 정초(正初)와 추석, 동지 때 매인당 각 1석씩 지급하였는데 14절목에 모두 지급하였으나 기로소의 당상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조 6년(1782년) 이후 3절목으로 축소하였다. 앵도(櫻桃)도 청초, 추석, 동지 3절목에 미(米)와 함께 매인당 실물로 5승(升)씩 지급하다가 현물 지급이 불편하여 현종 때 전 1냥으로 대급(貸給)토록 개정하였다.

제호탕(醞酬湯)도 3절목에 분봉토록 하였으나 기로소의 재정난으로 전(錢) 8원(元)으로 대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3절목에는 주식인 미와 앵도(櫻桃), 제호탕(醞酬湯) 등의 건강식까지 고려하여 지급하였다.

중양일(重陽日)에는 수시(水柿) 50개씩을 지급하였으나 현종 때 그 지급을 과하였다. 동절에 접어드는 10월 1일에는 노구(老軀)를 염려하여 낙죽(酪粥)을 생산하도록 유우(乳牛) 3척(隻)을 분봉하고 동지에는 이에 더하여 전약(煎藥)은 1인당 7승(升)씩 그리고 청심원 4제, 안신원(安神院) 반제, 소합원 1제, 소아청심원 1제 반, 포용원(抱龍元) 6제 등을 분봉하여 몸을 보양하도록 하였다. 동지 때는 역서(曆書)로서 중력(中曆) 6축(軸), 월력(月曆) 10축(軸), 청장력(靑粧曆) 1건 등을 당상원(堂上員)의 수대로 분봉토록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국가에서 특별한 계급 이상(장, 차관)이나 나이에 제한을 두어 어떤 모임을 갖는 공적인 대상자나 행사장소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며 다만 사적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치사제(致仕制)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목표로 두었던 조선왕조는 유교를 이용하였다. 그 대책으로서 건국 처음부터 유교적 윤리도덕에 기반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지배체제의 유지,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신(耆臣)을 중심으로 한 국로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국로를 우대하는 시책으로 가장 근간을 이룬 것이 관료에 대한 치사제를 운영한 것이다.

먼저 치사제의 운영은 조선왕조는 건국과 함께 왕조창업에 힘이 되었던 공신들에게 정치적 배려로서 여러 가지 우대책을 실시하면서 치사직(致仕職)을 정비하였다. 『예기(禮記)』에 “대부칠십(大夫七十), 이치사정의(而致仕正義)”라 하여 대부(大夫)로서 70세가 되면 치사케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70세 치사라는 원칙은 의제(儀制)일 뿐,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다. 그리고 기신의 요청이 있을 때 치사를 허락하는 형식을 취하였고¹⁵⁶⁾ 이 같은 형식은 세종 22년까지 적용되었다.¹⁵⁷⁾ 그러나 이와 같이 조관(朝官)들의 사직요청에 따라 일률적 치사케 한다는 것은 기신(耆臣)을 대우하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종 25년에는 이조(吏曹)의 계문(啓聞)을 통해 상호시행토록 하였다.¹⁵⁸⁾ 이로써 기신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국가에서는 치사 여부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능한 국로(國老)를 국정(國政)에 계속 봉사시킬 수 있고 아울러 국로를 우대하는 도리도 이를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명종대에 영상(領相) 윤원형이 세 차례¹⁵⁹⁾, 영상 상진이 다섯 차례나 치사를 요구하였지만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¹⁶⁰⁾ 이처럼 국가의 중대사에 필요한 중신에게 치사를 불허

156) 『증보문헌비고』 권228, 직관고15, 치사조.

157)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8월 갑술조.

158)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정월 임술조.

159)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정월 정자조.

160) 『명종실록』 권28, 명종 17년 정월 갑오조.

하는 사례는 세종대부터 정조대까지 흔히 있었다. 이는 조선왕조에서의 벼슬에서 진퇴(進退)를 분별하고 군왕은 충신을 중용하고 국로를 우대하는 이도(吏道)가 확립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와는 반대로 정년이 되어도 노퇴(老退)를 고할 줄 모르고 관직에 연연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명종대의 영상 상진이 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이를 만류한 이신의 상소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70세에 벼슬을 바치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렇지만 옛날의 군자들 중에 70세가 채 되기 전에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간 사람이 있었던 것은 대체로 벼슬길에서 가고 오는 데 대한 지조를 구차스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꼭 늙은 다음에 벼슬길에서 물러나려고 할 때는 임금의 미움을 받고서 쫓겨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 그러므로 군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하여 조심하였던 것이다. 슬프도다. 유교의 학문이 밝지 못하고 염치의 도가 없어져서 사람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어나는 원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권세를 탐하고 임금의 총애를 사모하여 백발이 되어서도 차마 벼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¹⁶¹⁾

위 사료는 인신(人臣)으로서 진퇴의 도를 알지 못하고 권력에 탐닉하여 백발이 되도록 사거(捨去)를 모르는 자가 많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상소는 노퇴를 기피하는 것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여 오로지 녹봉에만 마음이 끌려 노퇴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⁶²⁾ 그래서 조정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노인들이 그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까지 혹평하면서 늙고 병든 자들이 자리만 지키고 물러가지 않는 것은 미포(米布)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매달 시험을 보아 등급을

161)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0, 215쪽.

162) 위와 같음

나는 다음 성적에 따라 미포(米布)를 가감(加減)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¹⁶³⁾ 이어서 상소는 지혜와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질병을 이기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국록(國祿)만 허비하는 자가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물러가야 한다¹⁶⁴⁾고 주장하였다. 이는 70세 치사제의 틀에서 벗어나 탄력성 있는 운영을 통해 행정적 효율을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70세에 치사한 기신(耆臣)이라도 정치적 역량을 재등용되는 사례가 흔히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태종 2년(1402)에 영의정 이서(李舒)¹⁶⁵⁾에게서 처음 나타나며 숙종대에 송시열이 재등용되면서 구체화되었다.¹⁶⁶⁾ 이 후로는 철종대까지 중신(重臣)에 대한 재등용 사례가 허다하게 있었다.

그리고 조선왕조대 시행된 치사제는 그 시행 방법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시대 치사제의 운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관료는 70세에 이르면 당연히 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②70세에 이른 관료가 국가의 중대사에 관계되는 인물이면 치사를 유보하였고 ③중용(中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신이라도 치사제를 준용한 후 재등용시켰으며 ④이러한 흐름에 반해 70세에 이르러도 자리에 연연하여 조퇴를 기피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치사제 운영에서 중신의 치사를 만류하고 치사신을 재등용한 사례들은 정치운영에 있어서 기신(耆臣)의 경륜을 매우 중요시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치사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정종 때부터이다. 정종 원년 문화부는 시무책(時務策)을 올려 “이제부터 대소신료 가운데 나이가 70세인 자는 치사를 허락하여 사제(私第)로 나아가게 할 일입니다.”¹⁶⁷⁾

163) 위와 같음

164) 위와 같음

165) 『증보문헌비고』 권228, 직관고15, 치사조.

166)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0, 215쪽.

167) 『정종실록』 권1, 정종 원년 5월 경오조.

라고 건의하였으나 왕이 윤택하지 않았다. 2년 후 다시 문화부가 상소를 올려 “나이 많은 훈구(勳舊)로서 수직(授職)할 수 없는 70세 이상의 사람은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그대로 치사하게 해서 녹(祿)을 허비하지 않게 하며...”¹⁶⁸⁾라고 해서 치사제 시행을 주장하였다. 태종 16년에도 하륜이 치사제의 법제화를 요구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와서는 중국원전의 내용까지 인용하면서 보다, 정비되고 체계화 된 치사제의 실시를 꾀하고 있다.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건대 『예기(禮記)』에는 대부의 나이가 70세가 되면 벼슬을 바치고 만약 벼슬을 바치지 못할 형편이면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한다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이르기를 주제(周制)에도 대부(大夫)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벼슬을 바치게 되어있고 당나라는 여러 직사(職事)를 맡은 관원으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하는 것을 허가하는데 5품 이상은 표문(表文)을 올리고 6품 이하는 신청서를 내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종 22년 7월,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계(呈啓)를 들어 상소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든 관리들을 중하게 여겨 대소와 중앙관리들 중 70세가 되고 벼슬이 높으면서 명망이 두터운 사람에게는 특별히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고 관직도 그대로 주었으며 비록 벼슬이 낮은 관원이라도 허물만 없으면 파면하지 않고 쇠하여 병들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자청하기를 기다려서 직무를 해면하였습니다.¹⁶⁹⁾

세종 22년 8월에는 김빈(金鑣) 등이 상소를 통해 치사제의 내용에 대해 한

168)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신사조.

169)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7월 기미조.

층 상세히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벼슬길에서 물러나는 규정을 법으로 밝혀 놓지 않았는데 최근에 소재 관청에서 『예기』에 의거하여 벼슬을 바치게 하자고 청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또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 70세가 되기 전에 정신이 혼미하고 쇠약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세가 지나도 총명하고 강건한 자가 있는데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나이라 하여 일체 파직시키는 것은 또한 오래된 사람을 신임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벼슬을 바치는 규정이 이미 세워졌으면 전조(銓曹)에서 살피고 유사(有司)가 조사할 터이니.. 그러므로 1품에서 6품까지 벼슬에서 물러나는 규정을 분명하게 세우되 반드시 자신이 청한 다음에 바야흐로 물러나는 것을 허가하며 그 가운데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중외(中外) 역임해서 재물을 탐낸 행실이 없고 직사에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직사를 감당할만하면 비록 장수나 정승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대하여 만류하며, 염치없이 녹봉을 받기 위해 몸을 밀고 앉은 채 직위를 어진 이에게 양보하지 않는 자는 소재 관청에서 규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임금으로서 신하를 대우하는 것과 신하로서 처신함에 양편으로 그 도리를 다할 수 있어 염치를 알고 풍속이 후해질 것입니다....170)

위 사료는 ①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치사하는 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소재 관청이 『예기』에 의거하여 논청함으로써 실시되었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②70세에 이른 관원이 치사하는 법을 확정할 것 ③70세가 넘었어도 기력과 능력이 있는 자는 노퇴를 만류할 것 ④녹봉을 탐내어 고의로 노퇴를 고하지 않는 자는 유사(有司)가 규찰하여 거행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일단 불허되었지만 세종 25년 1월 5일 의정부의 다음과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170)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8월 갑술조.

70세에 벼슬을 바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높고 낮은 관원(官員)들이 나이 70세가 되기만 하면 당장 벼슬을 그만 두겠다고 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올해부터는 나이 70세가 되어 으레 벼슬을 바쳐야 할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조(吏曹)에서 살펴보아 아뢰어 시행하도록 하소서.¹⁷¹⁾

이에 의해 세종대부터는 노신(老臣)이 70세에 이르러도 이조의 계문(啓文)에 따라 치사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이후 문종 2년(1452년) 2월 의정부의 상소¹⁷²⁾에 따라 치사제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그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70세가 되어 관례에 따라 마땅히 치사해야 할 사람은 스스로 사면토록 허락하고¹⁷³⁾ ②그들 가운데 평소 명망이 높아서 직사(職事)를 맡길 만한 사람은 특명으로 취임토록 하며¹⁷⁴⁾ ③치사제에 의해 사퇴하는 날을 당해서는 3품 이하에게는 그 본직에 한 자급을 올려주고 2품 이상에게는 왕의 윤허를 얻어 시행한다.¹⁷⁵⁾ 이는 세종 22년 8월 5일 김빈 등이 올린 상소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에는 불허되었지만 이때에 와서 허락을 받아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후에는 70세가 되면 스스로 사면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만일 국가 중대사에 관계되는 인물이라면 왕의 특명으로 치사를 보류케 하였으며 치사자에 대한 예우도 『경국대전』에 ‘봉조하(奉朝賀)’라는 벼슬을 주도록 법제화하였다.¹⁷⁶⁾ 그러나 이후로도 치사제를 둘러싼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이는 관료가 과거를 통해 정계에 등장하고 정치적으로 관료제가 확대되면서 기신에 대한 처사가 불

171)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정월 임술조.

172) 『문종실록』 권12, 문종 2년 2월 신미조.

173) 『문종실록』 권2, 문종 2년 2월 신미조.

174) 위와 같음

175) 위와 같음

176)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0, 221쪽.

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신이 치사하기를 청할 때는 늘 전례가 거론되면서 치사에 대한 당부가 논의되었다. 예컨대 선조 36년 5월 예조가 “대신(大臣)의 진퇴를 신 등은 가벼이 논의할 수 없습니다.”¹⁷⁷⁾ 라고 하여 치사에 대하여 선조는 “『예경(禮經)』에도 벼슬을 바치는 조문이 있고 『국전(國典)』에도 벼슬을 바치는 제도가 있으며 전대(前代)에도 벼슬을 바치는 규례가 없었고 명나라 조정에서도 벼슬을 바치는 제도가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인을 우대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 같다.”¹⁷⁸⁾라고 하면서 치사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광해군 때도 영원군(寧源君) 홍가신의 치사에 대해서 예조가 상계하기를 “지금 홍가신이 훈신(勳臣)으로서 향가(鄉歌)에 돌아가 있으면서 치사하기를 상소하였는데 마땅히 의례(儀禮)로써 원에 따라 들어주는 우로(優老)의 뜻을 보이소서.”¹⁷⁹⁾ 하니 왕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선조와 광해군대의 두 사례를 보건데 조선시대의 치사제는 우로(優老)의 차원에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치사제는 세종대에 구체화되고 성종대에 법제화되는 과정을 밟았지만 그 후 제도적인 운영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적으로는 관료의 치사가 불가피하였지만 기신들에 대한 치사제의 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정치적인 관료의 운영과 사회적으로 기신의 우대라는 양면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왕조의 치사제 운영에는 연령을 70세로 규정한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치사제는 철종 때까지 계속되다가¹⁸⁰⁾ 갑오개혁으로 관리임용제가 시행됨으로써 치사제 대신 정년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도 치사제(정년퇴직제)는 시행되고 있

177) 『선조실록』 권102, 선조 36년 5월 신유조.

178) 위와 같음

179)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신사조.

180) 『증보문헌비고』 권195, 선거고12, 철종 9년.

다. 조선시대는 70세가 치사 연령이지만 요즘은 만 60세(공무원)로 단축된 것이다. 조선시대 치사는 왕명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던. 그러나 요즘 같은 특혜의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만60세로 일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긴 세월의 흐름에 국민의식 수준향상과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IV. 결론

통치이념으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왕조는 유교를 이용하여 실시한 노인제도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삼국시대부터 계속 확대되어 온 노인정책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강도 높게 실시한 조선왕조는 노인에 관한 정책을 법률화, 제도화시키고 대상을 서로(庶老)와 기신(耆臣)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같이 두 종류로 실시된 신분별 노인 정책을 살펴보려고 할 때 먼저 효행정표제도(孝行旌表制度)의 실시였다.

효행정표제는 고려시대부터 노인정책으로서 사회적 기반이 확립되었던 것인데 조선왕조에 와서는 유교적 윤리도덕에 맞게 사회교화 내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지배강화수단으로서 발전되었다. 그리고 태조 이래로 역대 국왕은 즉위 초에 반교(頒敎)나 전지(傳旨)를 통해 효행정표제의 중요성을 백성에게 알렸다. 조선왕조가 효행정표제를 강조한 것은 풍속을 귀후(歸厚)케 하고 교화시킴으로써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높이고 노인정책을 보다 강화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국왕에게 순종케 하고 국가의 지배체제를 돈독히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서로(庶老)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정책에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양로연(養老宴)이었다. 양로연은 기신연(耆臣宴)과는 달리 순수한 경로행사의 성격으로, 양로연의(養老宴儀)는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던 세종조에 모든 의식(儀式)이 유교적으로 정비되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양로연에는 국왕 혹은 왕세자가 참석하고 종재

(宗宰)와 서로(庶老), 천로(賤老)들이 모두 참석하는 등 크게 실행되었으며 그 경비도 국가나 지방재정에서 지출되었다. 이는 국가적 큰 행사로서 양로연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 수 있다. 양로연에서는 가자(加資), 사물 등의 행사와 노인직의 제수도 같이 했다. 양로연은 “인군(人君)이 경로(敬老)한다면 백성도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민덕(民德)도 후(厚)하게 된다.”는 윤리도덕에 기초를 두고 노인제도와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교화적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양로연과 같은 경로적 의미를 가미한 제도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특혜를 주었다. 우선 조선왕조는 노부모를 받들기 위한 제도로써 시정, 면역, 복호제도를 실시하여 그로 인해 군역(軍額)이 부족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 책임능력을 생각하여 면죄의 특혜를 확대하였다. 즉 노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효치주의적 입장에서 면죄(免罪) 또는 관리급가제(官吏給暇制)를 시행하여 부모를 모시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만이 이 국가에 충성을 할 수 있다는 윤리도덕에 기반한 노인정책이었다. 그리고 기신(耆臣)과 서로(庶老)를 구별치 않고 연령과 신분에 따라 자급(資給)을 더하는 가자제도(加資制度)를 노인제도로 실시하였다.

가자제도는 노인을 존경하고 사회적 명예를 높임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자급을 올려주어 사회가 노인을 우러러보도록 하는 경로의식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가자제도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귀(貴), 천(賤)의 구별 없이 모든 노인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국가는 이 가자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했으나 연령을 속이는 등 가자를 남발하는 등의 모순과 부조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자제도가 실시 초기의 의미가 퇴색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노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는 기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제도를 담당 수행할 국가기관으로

서 기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기로소는 고려 말 이래 상설된 기관으로서 태조의 신왕조(新王朝) 창건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기로회(耆老會)는 최고 의결기관인 도평의사사와 같이 할 만한 중요성을 갖는 의결기관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 힘입은 태종조에 이르러 기로회는 기로소로 개편과 동시에 정치적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즉 기로소의 위치를 비치사지사(非治事之司)로 바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적 경사에 하례(賀禮)하고 연회(宴會)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왕조는 기로소에 대한 입사(入社)자격과 기로소(耆老所)가 주관하는 기로연에의 참가 자격을 엄격히 정해 운영의 폐쇄성을 유지시킴으로서 기로소에 대한 입사를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인식시켰다. 또한 기로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사물(賜物)과 기신도상(耆臣圖像)을 하는 등 기신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통해 경로(敬老)의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군신동락(君臣同樂)이라는 방식으로 영향력 있는 기신을 포섭하려 하였다. 그리고 기로소의 지위 및 성격은 각 시기의 권력과 정치 발전과 민감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하였기 때문에 기로소의 위치와 성격의 변천은 왕권 내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기로소의 입사에는 무신(武臣)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기로소의 운영을 통해서도 조선왕조의 숭문경무적(崇文輕武的) 성격을 볼 수 있다.

결국 조선왕조에서 실시한 노인정책은 경로효친하는 유교윤리를 철저히 하는 효치주의(孝治主義)를 통해 사회질서를 계속하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백성을 이용한 역대 군왕들의 모습은 지금의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서로 앞 다투어 각종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지금의 생산인구(만 14세~만 64세) 중에서 직장에 적을 둔 국민은 노인(만 65세 이상)을 위한 요양보험에 의무 가입시켜, 산재, 의료, 국민연금, 고용 등과 같이 5대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또 노인수당, 노인교통비지원, 철도, 항공운임의 할인, 지하철 무료 이용 등은 조선시대 노인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민주주의 정치를 채택하므로 이념과 정책, 운영 등에 있어 조선왕조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인 웃어른에 대한 효 사상에는 현대 사회와의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효 사상은 차츰 약해져 가고 있다.



참고문헌

1. 史料

『증보문헌비고』

『예기』 상, 중, 하

『고려사』

『고려사절요』

『기사지』

『목민심서』

『악학궤범』

『경국대전』

『대명률직해』

『속대전』

『문헌비고』

『조선왕조실록』



2. 연구서

지재희, 『예기』 상 하, 자유문고, 2000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도서출판 혜안, 2000.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5.

연정열, 『경국대전과 노비상속에 관한 연구』,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83.